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71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구미시

2. B

3. C

4. D

5. E

원고 2 내지 5의 주소 구미시

원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F

서울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진식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 판결
환송 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4. 1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84,306,388원, 원고 B에게 178,855,486원, 원고 C, D, E에게 각 117,570,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8,974,477원, 원고 B에게 6,523,833원, 원고 C, D, E에게 각 4,015,8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부대항소원인, 첩부된 인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대항소장의 각 금액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망 H, 망 I(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과 J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경 피고 회사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베트남의 호치민, 붕타우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들 일행은 2012. 3. 27. 밤에 피고 회사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 K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 새벽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피고 회사의 현지 국외여행 인솔자 L을 만나서 함께 베트남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우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박처인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돌아와서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일부 여행자들은 이 사건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고 망 I은 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라. 그 후 K은 망인들과 함께 여행을 온 M으로부터 "I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망 H을 포함한 여행자 2~3명과 함께 망 I을 찾으러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으로 나갔다.

마. K은 그때 망 I이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망 I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

바. K은 망 I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위 해변을 떠나 위 호텔로 돌아왔고, L은 위 해변에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다.

사. K이 위 해변을 떠난 다음, 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해변으로 이동하여 해수욕이나 해변 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에 봉타우 시내 관광 등을 하며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환송전 당심 법원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봉타우 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은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인자(망 H은 1979년생, 망 I은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은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을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이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더 나아가 K이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6) K이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이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송민화

                 판사      황형주